

부도	서울
방편	자결제출
과장	부장

기안용지
(전화: 931-6312)

분류기호 문서번호	상공28014-716	시행상 특별취급	4	강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③.1.			
수신처 보존기간	3년			
시행일자	87. 7. 7.			
보조기관	상공과장 "리 결" 상공과장	협조기관	문 통 계 검 열 1987. 7. 07 통계관	
기안책임자	이시용	발신명	발 송 인 1987 7 07 상공부	
경유 수신 참조	수신처 함로 산업과장	시장		
제목	스매싱의 연쇄화 사업 운영요령 개정고시			
1. 유통 28014-1418(87. 6. 30)의 관련일				
2. 위 관련대호로 별첨과 같이 스매싱의 연쇄화				
사업 운영요령 개정고시 (상공부고시 제 87-18호)가 시행				
되어 송부하니 동사업 시행에 착수할수록 할 것				
첨부 : 상공부고시 제 87-18호 1부 클.				
수신처 : 상 1-17				
072				

대한민국

상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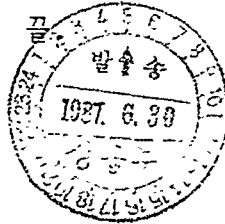
유통 28014 1418 (503-9456) 1987. 6. 3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소매상의 연쇄화사업 운영요령 개정고시

상공부 고시 제87 - 18호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등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상공부 고시 제87 - 18호 1부.



발주처 기	1987. 7. 2.	4174	결재 (공람)	국랑	
처리과				라랑	
				제랑	

무선공람
각주에 시달리라 합니다.

상 공 부 장

산업정책국장 결결

수신처: 나, 국세청장, 한국수퍼체인협회, 전국중소상인연쇄점협회,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발주처 기	1987. 7. 2.	4172	결재 (공람)		
처리과					

1-1 073

상공부 고시 제87 - 18호

도.소매업진흥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 고시 제87-8호(소매상의 연쇄화사업 운영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7. 7. 6.

상 공 부 장 관

* 다 음 *

제1조중 "시장법 제14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를
"도.소매업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서"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중 "위반하여" 다음에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추가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 적격기준중 "시장법"을 "법" 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87. 7. 6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5 호 서식]

제 호

연 쇠 화 사 업 자 지 정 서

사 업 체 명 :

소 계 지 :

대 표 자 :

사 업 의 종 류 :

지 정 년 월 일 :

사 업 지 역 :

지 정 조 건 :

도.소매업진흥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사를 연쇄화사업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인

[별지 제 5 호 서식 컷면]

변경 사항 기재란

변경 일자	변경 구분	변경 내용	처리 일자	확인기관	확인기관장인

분도	평오 () 요
방법	자료제공 특집 회견 (설명)
과장	국장

기안용지
(전화: 731-6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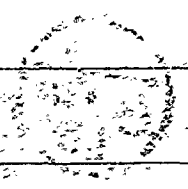
분류기호 문서번호	87-28014-66P	시행장 특별취급	2강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③.1.		
수신처 보존기간	3년		
시행일자	87.6.26		
보조기관	87공과강 "인정" 87공과강	협조기관	문서통체 검찰 1987.6.26 통계관
기안책임자	이시용	발송인	101127
경유 수신 참조	수신리 함포 신영과강	발신명의	시강
제목	연태화 사법과 변경사항 신고 인달에 관한 유의사항 리질		
1. 87공부유통 28014-1320 (87.6.19) 및 87공 28014-346 (87.4.1) 호의 관련임			
2. 위 관련 대호를 기달한 연태화 사법과 변경 사항 신고 리리시 리경보전 검토확인 요령을 별첨과 같이 일부 보완 (변경) 시달하니 동정부 시행이 착오 없도록 할 것			
가. 대호의 변경			
신규 리경 신청시 검토확인 요령과 동일			
나. 기타 변경 사항 078			

• 신규 리빙 시와 동일하게 처리 (관 심할라분
금 리안정하는 영략)

• 라분금은 증빙서류 (등기부등본등) 에 의한
개략검토

참부 : 면허화 사업과 리빙 조건 적격기준 및 검토요령 1부꼴

추진회 : 신규 1-17



연쇄화 사업자 지정 요건 적격 기준 및 검토요령

번호	지정 요건	적격 기준	검토 요령	검토 확인기관	종합검토 확인기관
1	자본금	· 유통업 실질자본 기준 (신규 및 대표자변경)	· 상공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요령에 의함	실질자본 진단 기관(공인회계사)	시
		· 등기부상 자본의 총액금 (기타 변경)	· 관련 증빙서 (법인 등기부등본)	구	시
2	점 포 가. 점포의 이증가맹 및 사업자 등록 여부 조사 나. 세무서 조사 사항이 위약것	· 주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에 의거 다른 연쇄화 사업자의 가맹점포로 신고된것 (이증가맹)과 부가가치 세법에 의거,사업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것은 부적격점포로 처리	· 신고(등록)서류 및 기타 비치자료에 의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세무서장(점포 소재지관할) 구	시
		· 업태, 규모, 소유주 가맹 계약등이 시장법령 및 이 고시에 적합할것 · 소비자구판장(농협 신협등 비영리법인의 판매장, 특정기관 또는 업체의 구내매점 성격의 점포등)은 부적격 점포 로 처리	· 관련증빙서 및 현장실사 결과에 의함	구	시

3	<p>보관시설 각, 자기소유 인 경우</p> <p>나. 타인소유 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자기명의로 등기되어 있는것 1년이상 임차계약이 되어 있고, 동 임차권이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등기된 것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증빙서 및 현장 실사 결과에 의함 관련증빙서류 및 현장 실사 결과에 의함 	구	시
4	운송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상 자가소유일 것 타인소유의 것은 자동차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된 것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증빙서 및 현장 실사 결과에 의함 	구	시
5	판매사	<p>대한상공회의소에 판매사등록을 필한 자로서 3월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증빙서 및 현장 실사 결과에 의하되 필요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납세사실 여부 조회 	구	시

대한민국
상공부

유 통 28014 - 1320 (503-9456) 1987. 6. 19.

수 신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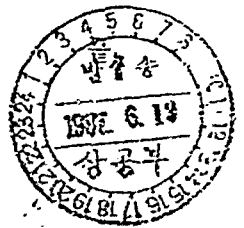
제 목 연쇄화사업장 변경사항 신고처리에 따른 질의(회신)

1. 상공 28014 - 0176 ('87. 6. 5)에 의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지정요건의 확인에 있어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출된 증빙서에 의한 개략검토동 시.도의 판단에 의하여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3. 따라서 시정범령 및 이에 의한 운영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사가 귀사의 사정에 맞도록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안은 산양제반 변경 처리 있음」



상 공 부	19 6. 2.	3969	간 제 (공 부)	과 2	과 2
처 기 과				제 2	제 2

구신공관

상 공 부 장



연쇄화사업장 신고

민원서류
처리기한

기안용지

분류기호 분시번호	상공28014-514	(전화: 731-6312)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양자: 순양자 10.5.3.1.	6	26
수집기 보존기 시행일자			
부 수 기 본	상공과장 "인경" 상공과장	위 조 기 관	분 시 통 제
시행책임자	이시용	권안은 감양허안 변경사 이철	인
상 수 집 기 본	각안참	조 87.6.3	
계 목	연태화사업과 변경사항신고 처리에 따른 질의 (3이1안)		
수신	상공부 장관		
참조	유통산업과		
제목	같은건		
	1. 유통 28014-514 (87.3.11) 호 및 유통산업 28014-1243 (87.6.3) 호의 관련입니다.		
	2. 연태화사업과 변경사항신고 처리시에도 2년 요건을 확인하게 되었는바 그 확인결과 질의에 따른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라오니 민원처리증인 사		

감안하시어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사항

1). 송풍부 2시 제 87-8호 (87.3.14) 제 8조 제 1항 중 "이리 드리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를 띄었으나 기 변경 등기 후 신고하였을 때 처리 절차

2). 동고시 제 8조 제 2항의 지정요건 확인 검토 절차는 동고시 제 3조 제 2항 내리 제 6항의 규정을 준용해야 되는지 여부

3). 위 규정을 준용하리 많은 경우 실질적 불공리한 (예외라 변경만 규정되었음) 일 기타 지정요건 검토 확인 절차

3. 아울러 "동 변경 사항 신고에 따른 신청서식 및 처리기간도 정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명인 등기부 등본 1부

2. 신청공문 수본 1부 끝

(3.12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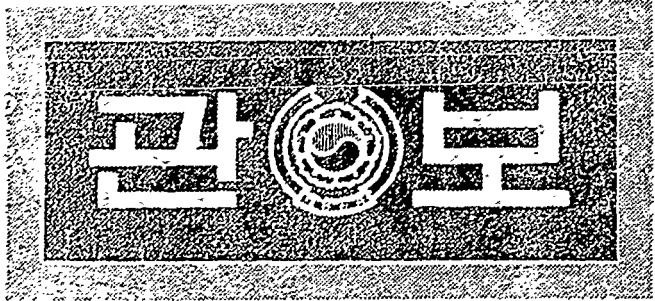
수신 동고시 행정과

084

대한민국정부

발행 총무처 (별첨 ☎ 720-4331)
 ☎ 754-4332

-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비치용관보는 5년간 보존한다.



제10608호 1987. 4. 10 (금)

인사

○인사발령 3

고시

- 법무부고시제48호·제49호(국적상실) 5
- 통역지원부고시제87-13호(무원단<분반>및연단의최고판매가격)..... 8
- 문화관광부고시제692호(고능선조물지침).....10
- 직도청고시제 9 호(직도소출입면허의일반수요직함성기준)11
- 전파연구소고시제256호~제261호(형식검정합격기기일련번호부여)11
- 기술개발연구소고시제23호(리질의검용<중비검치>허가) 12
- 농수축산부고시제10호(도모수역상징) 12
- 부산개발청고시제187호(부산국허가).....12
- 부산개발청고시제188호~제198호(신박국허가에관한고시중개정)13

공고

- 과학기술지공고제87-78호(기술용역업등록취소).....15
- 과학기술지공고제87-79호·제87-80호(기술용역업등록) 15
- 과학기술지공고제87-81호(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15
- 과학기술지공고제87-82호(기술용역업등록취소).....16
- 과학기술지공고제87-83호·제87-84호(기술용역업등록) 16
- 과학기술지공고제87-85호(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16
- 과학기술지공고제87-63호(1987년도관세사시험시행계획)..... 16
- 공업진흥청공고제87-458호~제87-460호(KS표시허가)..... 17
- 국립공인시험원공고제87-5호(직산식기술원미터형식승인) 18
- 원주지방국보관리청공고제15호(도로공사계획) 18
- 서울채신청공고제800호(전기통신공사업양도양수인가).....19
- 제주지방태권항만청공고제13호(공유수면점용<공작물설치>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 19
- 부산경제무역진흥공사공고제18호(사업자등록말소) 19

입찰공고

○포탈청내자공고제87-61호~제87-64호(조달물자<배차>구매위탁공고) 19

(이면 계속)

회	일	장	과	과	과	과	과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1201-4A 1987. 12. 18 승인

190x268 신문용지 5480/㎡

내유지

2.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 후보자의 선발

3.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자에의 특별과제부여

4.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자에 대한 지도·감독

5.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관의 변경 및 일시 귀국의 승인

6.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

7. 제 21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고서의 접수

8. 제 31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선발

9.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훈련의 위탁 실시에 관한 사항

10. 제 34 조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훈련기관의 선정·단속 및 훈련목적 변경의 승인

11.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일시 귀국 승인

12.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전문가의 일시 귀국 휴가의 허가

13.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전문가의 경우에 준용되는 제 10 조·제 16 조 내지 제 18 조·제 20 조 및 제 21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② 사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6 조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권한과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정부 관리양곡의 부산물인 사료(미강을 제외한다)의 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③ 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9 조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 23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건공 허가(시·도지사가 직할 초지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염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1 조 (권한의 위임) 상공부장관은 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3 조 및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염전개발의 허가·허가의 취소 및 개발의 정지
2. 염전 또는 칠일식기계법에 의한 염 또는 합수제조의 허가·허가의 취소 및 제조의 정지
3. 염의 재제 또는 가공의 허가·허가의 취소 및 재제 또는 가공의 정지

⑤ 시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6 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상공부장관은 법 제 22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14 조제 1항·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사업자의 지정·지정의 취소 및 지원의 중단
2. 법 제 18 조제 1항 및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3. 법 제 20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쇄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공고

② 상공부장관은 법 제 22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사의 자적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배합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⑥ 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2 조제 1항에 제 1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 88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대리인 임신교의 수리

⑦ 건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3 조제 1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 49 조제 2호 내지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일반건설업기·특수건설업기이에 관한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⑧ 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6 조의 2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P